

##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I.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 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0.5억원	(1차) 1.17~2.22
	고도화1		2억원	(2차) 6.1~6.30
	고도화2	■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수준 향상을 위한 구축 지원	4억원 (총 15개사)	1.17~3.8
	업종별 특화	기초 고도화1	■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운영기관 먼저 선정 후 수요기업 모집 진행	0.5억원 2억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 확인기관 등 먼저 선정 후 참여기업 모집 진행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 (백만원)	(확인기관 등) 1.17~2.7 (참여기업) 수시(3.2~)

## II. 주요사항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공통)	지원유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고도화2 (4억원)</td> <td>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td> </tr> <tr> <td>고도화1 (2억원)</td> <td>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중간1)</td> </tr> <tr> <td>기초 (0.5억원)</td> <td>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td> </tr> </tbody> </table> <p>※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0.5억원 지원</p>	구분	내용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중간1)	기초 (0.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구분	내용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중간1)								
	기초 (0.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모집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반기 각 1회 모집·선정</li> <li>① '21년 지원과제의 경우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완료일 이후 '22년 사업신청 가능</li> <li>② '21년 기초단계 지원·구축 중인 기업은 '22년 상반기에 고도화 사업신청 가능. 단, 선정 시 '21년 사업 구축 완료 후 사업 시작</li> </ul>								
	정부 지원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존('21)</th> <th>개편('22)</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초 (0.7억원)</td> <td>기초 (0.5억원)</td> <td>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td> </tr> </tbody> </table> <p>※ 고도화1,2는 '21년도와 동일 (각 2억원, 4억원)</p>	기존('21)	개편('22)	비고	기초 (0.7억원)	기초 (0.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기존('21)	개편('22)	비고							
	기초 (0.7억원)	기초 (0.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선정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존('21)</th> <th>개편('22)</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접수(요건검토) → 현장평가 → 도입기업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 → 협약</td> <td>신청·접수(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확인 → 선정 및 협약</td> </tr> </tbody> </table> <p>※ 선정 전 현장평가에서 선정 후 현장확인으로 변경</p>	기존('21)	개편('22)	신청·접수(요건검토) → 현장평가 → 도입기업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 → 협약	신청·접수(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확인 → 선정 및 협약				
기존('21)	개편('22)									
신청·접수(요건검토) → 현장평가 → 도입기업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 → 협약	신청·접수(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확인 → 선정 및 협약									
코디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디네이터 지원은 기초단계 신청기업에 한해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선택)</li> <li>* 고도화1·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관리 진행</li> <li>※ 업종별특화도 동일기준 적용</li> </ul>									
현물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축인력 외에 사후관리 인력 추가 인정 (기존) 구축인력 인건비 → (추가) 구축인력 + 사후관리 인건비</li> <li>* 인건비는 기업 부담금 20%이내</li> </ul>									
클라우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지원기한 확대(소기업, 3년→5년)</li> <li>*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li> <li>-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li> </ul>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li> <li>-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li> </ul>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li> <li>*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li> </ul>									
로그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제출 필수</li> <li>※ 스마트공장 1번가에 로그정보 제출</li> </ul>									
가점 (신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가점(3점) 추가</li> <li>-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내 입주기업 가점(3점) 추가</li> <li>- FEMS 솔루션 구축희망 기업 가점(3점) 추가</li> <li>- 상생결제 우수기업 가점(3점) 추가</li> </ul>									
수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기업이 수준확인을 받은 후 구축지원 사업 참여시 목표수준이 기존 수준확인 수준과 동일하여도 1회에 한해 해당 수준에 맞는 금액 지원 (예) 수준확인 중간1 기업이 보급확산사업에 고도화1(중간1) 신청 시 : (기존) 동일수준 적용(0.5억원 지원) → (개선) 고도화1 적용(2억원지원)</li> </ul>									

### III. 사업별 지원계획

####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고도화1)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 추진체계



#####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지원 (선택가능)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미지원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에 입력 필요 (스마트공장 1번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1년까지 모든 지원기업) 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 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li> </ul> </li> <li>○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li> </ul>
--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이상으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부터 차수별 신청·접수

구분	신청기간	사업유형
1차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2일(화) 17시까지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2차	- 2022년 6월 1일(수) ~ 2022년 6월 30일(목) 17시까지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 2차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별도안내 예정)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 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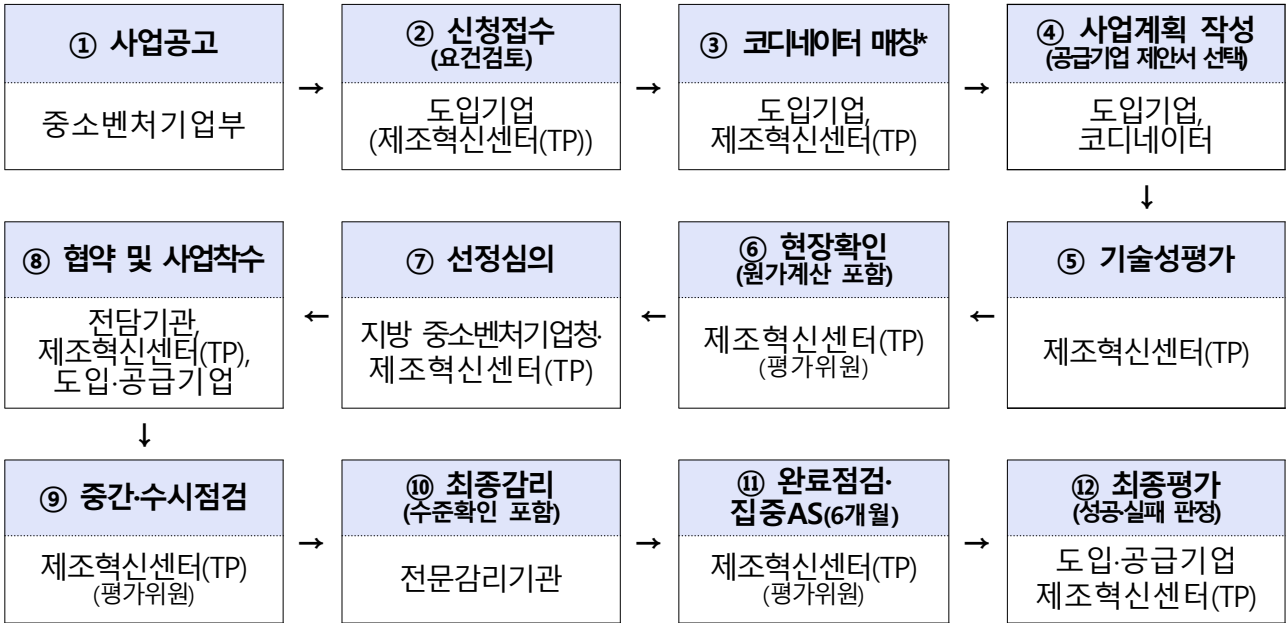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0년, '21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a href="http://total.kcomwel.or.kr">http://total.kcomwel.or.kr</a> )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관련양식은 <https://1st.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 ③ 코디네이터 매칭은 기초단계 기업만 지원되며, 희망기업에 한해 선택적으로 지원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기초, 동일수준, 고도화1) ① 기술성평가 → ② 현장확인 → ③ 선정심의(선정)

구분	기술성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선정절차 및 방법	-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파악하고 대면(발표)방식으로 지원 적합성을 평가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적/부 판정	- 최종점수 및 현장확인 특이사항 의견 등을 상정한 안건으로 선정 심의의결
	- 기술성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 사업계획서 내용 및 가점 여부 확인	- 선정·후보·탈락 여부 통보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선정심의에서 탈락과제로 안건 상정

<기술성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역량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 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합 계		100

<현장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기초·동일수준·고도화1)
유턴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 단,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 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선정기업의 포기·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주관으로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1번가에 제출 필수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 전문가, 공급기업, 감리기관 및 원가계산기관 모집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1번가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1번가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단, '21년 기초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22년 고도화 과제 신청 가능 (고도화 과제는 기초과제 구축 완료 후 사업시작)**
  -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2년 사업신청 가능)
  -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지원'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li> <li>* '21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또는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지원기업 포함</li> <li>·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li> <li>·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li> <li>* 사업협약서 또는 교육이수증 또는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li> </ul>
코로나19 대응 (* 가점 5점 부여)	<p>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p> <p>*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확인)</p>
스마트 생태공장	<p>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p>
산단대개조 산단	<p>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유턴기업	<p>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p>
조선기자재	<p>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p> <p>*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p>
광주형 일자리기업	<p>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업	<p>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와 해당 지자체*(광주, 황성, 밀양, 군산, 부산)에서 인정한 기업</p> <p>*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뿌리기업	<p>「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위기 지역	<p>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p> <p>* (예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p> <p>*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p>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p>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p> <p>*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p>
노동시간 조기단축	<p>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p> <p>*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p>
	<p>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p> <p>*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p>
	<p>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p> <p>*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p>
청년 친화형 산단	<p>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p>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p>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p>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p> <p>* '21년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역(대전 대덕구, 경북 영천시)</p>
사업재편 승인	<p>「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p> <p>* 기업활력법 종합포털(<a href="https://www.oneshot.or.kr">https://www.oneshot.or.kr</a>)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p>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FEMS 솔루션 도입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신청 시 FEMS 솔루션 도입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붙임1)에 제시된 데이터 포맷 규격화 또는 통신방식 표준 적용 예정 기업(총 6개 표준)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상생결제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실적 우수기업, * 상생결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군수품 제조기업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 <a href="https://mnd.go.kr">https://mnd.go.kr</a> ) 內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 (2)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 추진체계



### □ 지원내용

-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 기능의 추가 도입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생산공정 개선 등 제조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2	- <b>중간2 수준 이상</b> 스마트공장 구축 * 실시간 공장 및 설비 제어를 위해 AI 스마트공장 기술 적용	4억원	12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 도입기업 적용 AI 솔루션은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솔루션스토어 등록 및 거래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고도화2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2 수준 이상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기업	미지원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공급 기업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에 입력 필요 (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 ~ 3. 8(화) 17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1번가 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0년, '21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a href="http://total.kcomwel.or.kr">http://total.kcomwel.or.kr</a> )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관련양식은 <https://1st.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지원절차



##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선정절차) ① 기술성평가 → ② 현장확인(선정)

구분	기술성평가	현장확인
선정절차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를 파악하고 대면(발표)방식으로 지원 적합성을 평가</li> <li>- 기술성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적/부 판정</li> <li>- 사업계획서 내용 및 가점 여부 확인</li> <li>- 현장확인 후 운영기관에서 선정결과 별도 통보</li> </ul>

#### <기술성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역량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제어,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준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를 기반으로 AI 솔루션 및 도입장비, SW의 타당성 및 데이터 연계성 등이 도입기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게 적절히 제시 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합 계		100

<현장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현행)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기타사항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AI 학습,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컴퓨팅 환경의 인프라 구축에 KAMP\* 자원의 활용 및 연동 필요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KAMP 기반의 제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제조데이터 수집 및 저장 시 AAS 표준\* 등 데이터 규격의 호환성 확보 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이 공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고도화1)” 의 공고 내용 적용

\* 단,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통기업의 지원금 확대 지원은 해당 없음



### (3)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모집

※ 본 공고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운영기관 선정 이후 중소·중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는 추후 실시 예정

####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 중소·중견기업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업종별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

#### □ 추진체계 및 역할



- (운영기관) 수요기업 발굴 및 선정, 우수 공급기업 발굴 및 관리,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 도출 및 선도모델 제시,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 등

#### □ 지원내용

- (운영기관)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총 사업비의 5% 이내 운영비로 책정 가능
- (도입기업)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분야 예시	지원내용 예시
식품	·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전자부품	·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 ex)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기계부품(자동차 등)	· 부품 품질 및 성능 향상, 미래 자동차 부품 등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가상 성능시험, 가상공정배치, 가상생산 등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도입 등
기타	· 기타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 섬유, 조선기자재, 도금, 인쇄,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 운영기관 신청자격

- 업종 전문성·대표성 및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
- \* 운영기관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지원규모

- 스마트공장 신청수요 및 운영기관 역량을 고려하여 10개 이내 선정
- \* 운영기관별로 최소 10개 과제 이상의 신청수요 확보 필요

□ 사업기간 : 최대 1년 6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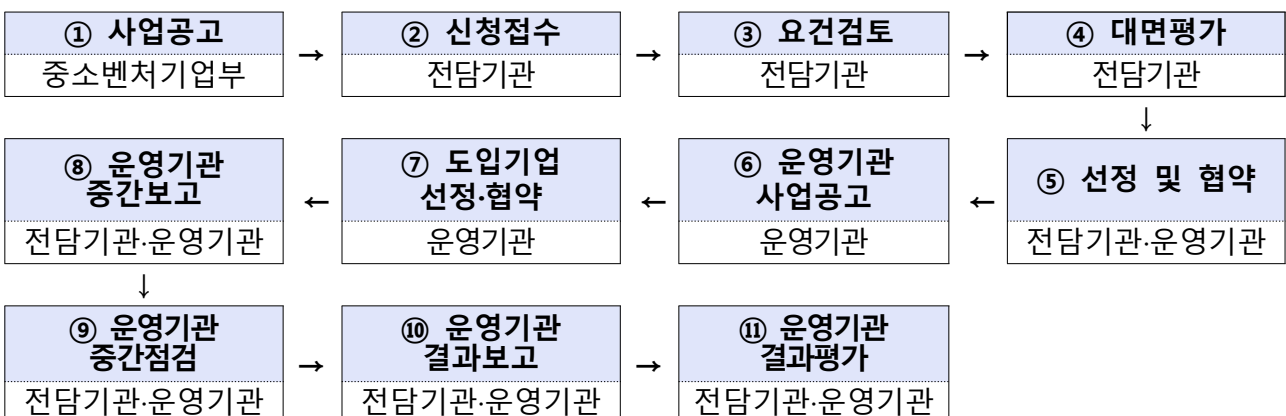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22일(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운영기관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2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계획서
3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도입기업 모집용)

\* 관련양식은 <https://1st.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선정절차 및 방법

- 운영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 진행
- (선정 시 평가 주안점) 수요과제 발굴역량,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제시 및 안내 역량, 공급기업 Pool 운영·관리 역량, 신청업종과 운영기관과의 관련성,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

<대면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의 적정성 (60)	- 업종의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타당성)	10
	- 업종 특화 솔루션 도출 및 전략수립의 적정성	20
	- 사업기획, 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20
	- 업종 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0
운영기관 역량 (40)	- 운영기관 업종 전문성 및 대표성	10
	- 도입기업 수요발굴 및 공급기업 Pool 운영·관리의 적정성	10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역량 (홍보, 사업추진절차 이해도, 사업·사후관리 등)	20
합 계		100

- 가점 내용 : 신청 수요기업의 30%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

□ 기타사항

- 운영기관은 해당업종의 특화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사전에 엄선하여 공급기업 Pool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방안을 수행계획서에 제시
- 대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선정예정
  - 업종별 특화 사업 목적에 벗어난 범용 업종을 제시한 운영기관은 대면평가 시 평가지표 內 “사업전략의 적정성” 최저점 부여
- 전담기관이 운영기관 중간점검을 의무적 실시, 부적정 운영기관은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
- 전담기관이 운영기관에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당해연도 사업운영 결과를 차년도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미흡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본 공고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운영기관 선정 이후 중소·중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는 추후 실시 예정

#####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 추진체계 및 역할



- **(전담기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관리,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및 제재 등 관리·감독, 진단모델 개발 및 제도개편 기획 등
- **(확인기관)** 수준확인 수요 발굴 및 홍보, 수준확인 신청서 요건 검토 및 심사원 배정, 수준확인 실시 및 진단보고서 작성, 수준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등
- **(교육·심의기관)** 심사원 인력 Pool 관리,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제작·배포·실시,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등

##### □ 지원내용

- **(확인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도입기업)** 기업이 스마트화 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 수준진단 및 수준확인서 제공,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모집

### □ 수행업무

구분	주요 역할
확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업 수요발굴 및 수준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 홍보 등</li> <li>○ 수준확인 참여기업 신청서 요건 검토 및 심사원 배정</li> <li>○ 심사원을 통한 수준확인 실시 및 진단보고서 작성 및 수준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등</li> </ul>
교육·심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원 인력 Pool 관리</li> <li>○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제작·배포·실시 등</li> <li>○ 수준확인 심사 결과에 대한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등</li> </ul>

### □ 신청자격

-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수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협회·단체
  - (확인기관) 개별신청 또는 컨소시엄 신청가능
  - (교육·심의기관) 개별신청만 가능(1개 기관 선정예정)
    - \*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기관유형을 선택(택1)하여 신청
    - \*\* 확인기관 선정규모는 신청수요 및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1. 17(월) ~ 2. 7(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각 1부
2	서약서
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주요 인력 약력
5	유사 사업 실적증명서
6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신청기관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확인기관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를 제외한 붙임서류 각각 제출

## □ 선정절차 및 방법

-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공모 신청기관 중 자격요건 적합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발표 평가

구분	선정절차	선정방법	비고
선정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관을 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석

###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확인기관 >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확인기관	사업 목표의 적절성(20)	○ 사업 참여 취지·목적의 적정성	20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수행 부문(50)	○ 사업 수행계획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30
		○ 수행조직·인력의 적정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관리 부문(30)	○ 수준확인 수요발굴 및 홍보 추진방안의 적정성	20
○ 사후관리 방안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연계 방안의 적정성		10	
<b>합계</b>			<b>100</b>

###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교육·심의기관 >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교육·심의 기관	사업 목표의 적절성(20)	○ 사업 참여 취지·목적의 적정성	20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수행 부문(50)	○ 사업 수행계획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30
		○ 수행조직·인력의 적정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관리 부문(30)	○ 교육 프로그램 및 심의위원회 추진방안의 적정성	20
○ 심사원 Pool 관리 및 교육체계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부문(30)	○ 심사원 Pool 관리 및 교육체계의 적정성	20	
	○ 심사보고서 품질 향상방안의 적정성	10	
<b>합계</b>			<b>100</b>

## ② 참여기업 모집 (\*확인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 '14~'21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또는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자체 고도화에 대한 증빙자료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이후 참여가능

###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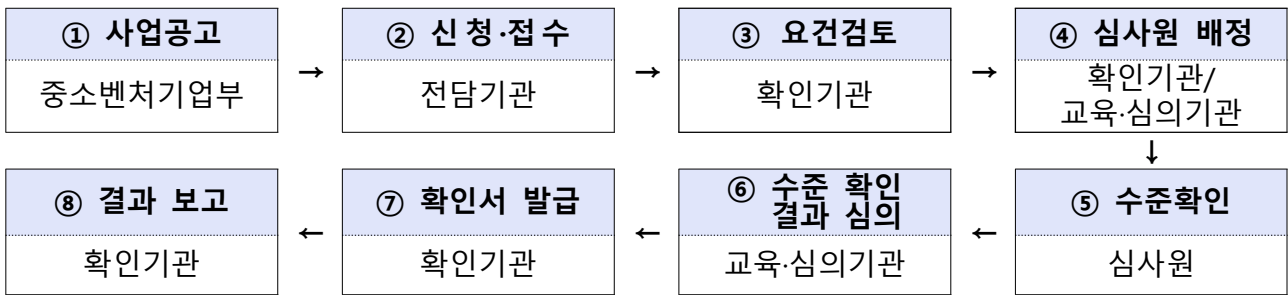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3. 2(수)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구분	온라인 등록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중인 기업</li> <li>·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li> <l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li> <li>·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li> </ul> |
|--|--|



## IV. 문의 및 연락처

###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기초·고도화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별 문의처 참조
고도화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인공지능제조이니셔티브	044-300-0944 031-703-9101
업종별특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9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044-300-0956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60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3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①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인터페이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플랫폼-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

**② (KS X 9101) 제조분야 기업업무 시스템 간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

- 기업업무에 관련된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 식별을 규정한 데이터 표준

**③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

**④ (IEC 62714) 산업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사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자동화 마크 업 언어(Automation ML)**

- 생산시스템의 설계 프로세스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 설비 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연동하여 가시화

**⑤ (ISO 10303)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 데이터(CAD, CAM)의 데이터 파일을 교환하는 변환방식\*에 대한 표준

\* 이종 회사의 CAD, CAM 프로그램 사용 시 제품 데이터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표준

## ⑥ (IEC 62264) 엔터프라이즈 제어 시스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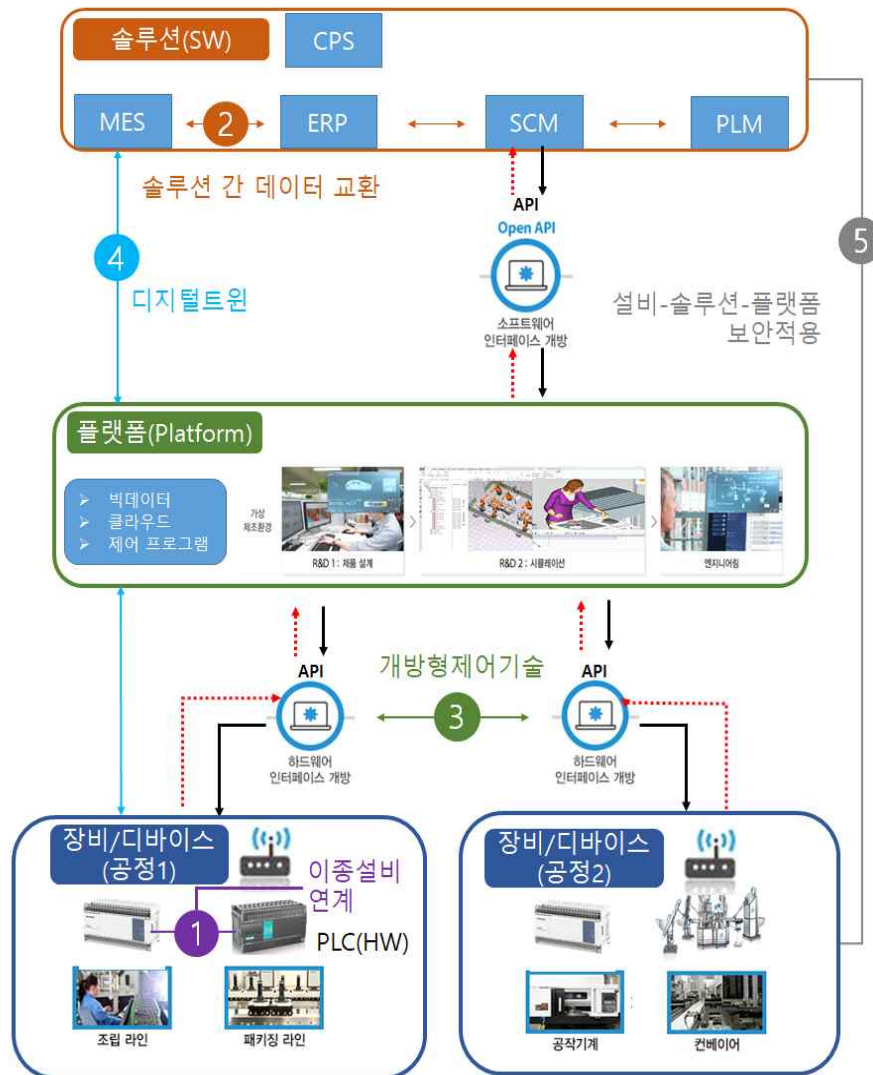
- 설비-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

\* 설비의 데이터를 PLC-제어프로그램-솔루션(MES 등)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솔루션(MES 등)-제어프로그램-PLC를 제어하는 표준

<그림> 표준 적용 예시

솔루션 :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 (MES, ERP, SCM, PLM, WMS, CPS 등)

플랫폼 :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SW, 제어 프로그램, CAD, CAM 등)



## 붙임 2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